



공정거래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

2021년 6월 16일(수) 배포

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

2021년 6월 16일(수) 10:00부터

담당과장: 이지훈(044-200-4481)

보도 가능

담당: 권리근 사무관(044-200-4518)

공정위,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- 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-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'공정위')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(협회장 권석형, 이하 '건기식협회')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(총 46일) 건강기능식품 분야 「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」를 운영한다.

<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개요 >

- 운영 기간: 2021. 6. 16. ~ 7. 31. (총 46일)

- 운영 절차

자진신고센터 설치
(공정위, 건기식협회)



참여 독려
(건기식협회)



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
(공정위)

- 신고 방법: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
- 신고 접수·문의처

- 공 정 위: antimonopoly@korea.kr (044-200-4518)

- 건기식협회: maytidug@naver.com (031-628-2327)

- (추진 배경)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*하고 있으나,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'쪽지처방' 문제가 있었다.

*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(억 원, 식약처): ('17) 28,024 → ('18) 31,948 → ('19) 38,684

-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.

* (주)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(7천만 원) 부과('21. 4. 8.)

**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으로,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'처방'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 가능

-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,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.
- (업계 의견 수렴)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,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(5.3)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*을 논의하였고,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 - * ①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시정, ② 협회 차원의 자율 규약 제정 등
-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범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으며,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*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.
 - *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,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
- (신고 접수)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,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(공정위: antimonopoly@korea.kr, 건기식협회: maytidug@naver.com)으로 접수하면 된다.
- (인센티브)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.
 -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,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.
 - ※ 다만,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
 - 한편,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범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.
- (기대 효과)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(향후 계획)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「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 경쟁규약」을 연내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.

*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(공정거래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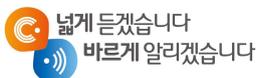
** 규약 도입 분야: 의약품, 의료기기, 치과기재 등

<붙임>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서식



공정거래위원회

D6EED36588C543099F551E78BF94A244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www.ftc.go.kr

